

교양교육과정 연구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 35조에 의거 시대적 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여 교양교육과정의 개발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교양교육과정연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하고 심의한다.

1. 핵심역량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정 및 교과목 개발에 관한 사항
2. 교양 강좌의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
3. 교양교육과정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에 관한 사항
4.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교양·교직·평생교육사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개편에 관한 사항
5. 교양교육과정의 학점 및 강의시수에 관한 사항
6. 교양교과목의 교재출판에 관한 사항(신설 2019. 2. 1)
7. 기타 경미한 교양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(호변경 2019. 2. 1)
8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(호변경 2019. 2. 1)

제3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더:함교양대학장, 더:함교양대학 부학장, 교무부처장(학사담당), 학사팀 교육과정담당자, 기초교양교육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12인 이내의 위원과 외부 자문위원 1인 이상과 1인의 간사를 둔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더:함교양대학장이 맡으며,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각 계열 및 학문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 단 임기 이전의 위원 교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.

④ 간사는 기초교양교육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하위조직)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위원회의 산하에 대표교수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5조(행정절차) ① 위원회와 각 학부·학과 및 부서는 제2조 사항 중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기초교양교육팀에 공문으로 제출한다.

② 더:함교양대학장은 요청사항의 성격에 따라 교양교육과정 연구위원회나 대표교수 운영위원회에 배정한다.

③ 위원회 간사는 심의 결과 및 상정 안건을 더:함교양대학장의 승인 후 교육과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 단,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후, 심의 결과를 출판부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.(개정 2019. 2. 1)

제6조(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더:함교양대학 부학장이 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

③ 간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매학기 초와 매학기 말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
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업무관장) 위원회 업무는 기초교양교육팀에서 관리한다.

제9조(시행절차) 교양교육과정의 전면개편 등 주요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무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.

부 칙(2016. 3. 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9. 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2. 1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